

2022년 퇴직연금제도 변경 안내

1. 사내 퇴직금제도 근로자의 의무의전(2022.04.14. 시행)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급여통장 등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30~40% 퇴직소득세 절세효과, 수령한 퇴직금을 IRP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포함 모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의무적으로 회사는 개인형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IRP계좌개설 필수, 신용불량자의 이유로 지급거부 안됨)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주소지 방분,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해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IRP계좌개설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사내 퇴직금제도 예외대상

1. 55세 이상
2. 퇴직금 300만원 이하
3. 사망으로 인한 퇴직
4.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출국
5.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